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등이 범한 내란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권의 민간 이관〉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63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3.
3. 회 부 일 : 2024. 12.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장은 내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또는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 등에 대해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하거나 예비, 음모한 경우에는 군사법원과 군검찰단의 관할임에 따라, 경찰 등 정부의 수사기관이 현직 군인을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직 군인이 범한 내란의 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의 죄를 범한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의 예비와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대상에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¹⁾(이하 “군인등”이라 함)이 범한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²⁾를 추가하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생략)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 1)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현행	개정안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대한민국헌법」 제110조³⁾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⁴⁾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한편,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

2)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군사법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닌 한 군인등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 등에 관한 범죄,
 군인등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및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에 대한 재판권은 법원에 있음.⁵⁾

< 군인등에 대한 형사절차 이원화 >

	구분	수사	1심	2심	3심
기존	모든 범죄	군사경찰 군검찰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
개정	모든 범죄 (민간이관범죄 제외)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민간이관범죄 ① 성폭력범죄 ② 사망원인범죄 ③ 입대 전 범죄	민간 수사기관 (경찰, 검찰)	지방법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합의부)	

자료: 국방부

5)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제외한다.
 -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외국인
 -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 개정안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 내란 목적의 살인죄 및 각 죄의 미수·예비·음모·선동·선전에 대한 재판권을 군사법원에서 법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군사법제도의 운영상 핵심과제가 “국민 일반에게 보장되는 평등한 법적 보호를,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인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것인가”⁶⁾임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⁷⁾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먼저, 개정안과 같이 군인등이 범한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찬성하는 견해로는, ①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재판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군 지휘관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의 군사법원 제도 하에서는 군사재판의 권위와 사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 ② 군의 특수한 사정은 증거조사, 의견제출 등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 ③ 최근 군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교통사고,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는 무관한 것이며 이와 같은 비순정군사범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일반 법원에 비해 그 양형의 균형감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6)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결정

7) 제38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1.6.10.)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회의록, pp. 56~61

○ 다음으로, 개정안과 같이 군인등이 범한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전쟁 발생 시 신속한 재판을 통한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시에도 군사법원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② 증인 및 감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군사기밀 등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③ 군의 기밀성, 조직 등 군의 특수성을 경험 및 이해하는 군판사가 군사법원에서 군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방부 및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국방부는 군인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는 국가의 내부적 질서를 문란시키는 군형법상 반란죄와 실질적으로 침해법익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른 여타의 범죄에 비해 군사법원에서 신속·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 「군사법원법」 제67조의2⁸⁾에서 군사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순회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속한 수사·재판은 일반법원에 비해 군사법원에

8) 제67조의2(개정 의 장소) ①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서 더 유리하여 민간 사법기관에서 진행 시 오히려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 군형법 범죄 등 군사 관련 범죄의 경우 군사적 식견과 군 특수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군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군인의 내란범죄와 관련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군인 등의 내란범죄는 군지휘권 하에서 군대조직을 동원하여 일어나는 전형적인 군사범죄의 일종이라는 점, 현행법에서도 합동수사 등으로 군인들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군인이 내란죄 등을 범한 경우 군의 조직·인력·장비 등을 이용할 개연성이 높아 재판 과정에서 군사기밀 등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는 점, 군인 등의 내란범죄가 군사반란에 의한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제5조)⁹⁾의 재판권과 이원화될 소지도 있다는 점, 일반법원에서 군형법 특례 조항을 간과하여 판단한 사례도 확인되는바 혼란 방지를 위해 ‘군사법원 전속관할 원칙’의 예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9)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문 의 처
02)6788-5073